

- ◆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써 해당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되, 본 지침보다 엄격한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2판)

2022. 2. 23.



고용노동부

신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기준과



목 차



I.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5
1. 코로나19 개요	5
2. 목적	7
3. 기본방향	7
II.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9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9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10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13
4.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 관리	16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19
6. 위생 및 청결·소독 등	21
III.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23
1. 유연근무제 활용	23
2. 기본방침	23
3. 휴가 및 휴업 관리	24
4. 가족 돌봄 휴가	25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25
IV. 코로나19 관련 Q&A	27



참고 자료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중앙방역대책본부)	35
2.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43
3.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주요사항	65
4.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66
5.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71
6.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72
7.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79
8. 콜센터 안내	80
9. 격리해제 확인서	81
10.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82
11.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83
12.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87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89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90
15.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108
16.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110
17.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6판)	112
1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120
1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132
20.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	143
21.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153
22.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159
23.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174

1 코로나19 개요

① 정의

-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② 임상적 특성

-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다양함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치명률) 세계 1.38%(WHO, '22.2.22. 기준), 우리나라 0.3%('22.2.22. 기준)
-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 요인) ①65세 이상, ②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③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④암, ⑤비만, ⑥장기 이식, ⑦흡연

③ 진단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신속항원검사

④ 치료

- '22.1.28.기준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중 국내 개발 치료제는 21품목이며, 이 중 14품목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7품목은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되었음
- 그 외 국외 개발 치료제는 7품목으로 이 중 3품목이 현재 임상 진행 중이고 4품목의 임상시험은 종료되었음

⑤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출장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하는 경우 아래 예방수칙을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귀국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2 목 적

-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기본 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 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 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 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방역관리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① 전담조직 구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및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 구성(실별, 센터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및 점검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 주요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한다.(참고2 참조)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의심증상(발열 ·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의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호흡기 증상 등 종사자 증상확인 주기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1일 1회 이상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발열 여부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감지(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

- 개인별 정확한 체온의 측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 (인증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

-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체온을 측정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 만일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손 소독 또는 손씻기를 실시

- 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경우, 체온 측정 전·후 손 소독을 실시한다.

*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한 체온계의 접촉부위를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 또는 커버 등의 교환을 통해 올바른 측정 방법에 따라 주의하여 측정

② 사업장 내 발열·호흡기 증상자 발생 시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등을 활용

- 근무 중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해당 노동자를 격리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인 경우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한다.

- 다만, 고위험군*(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 ①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②의사소견서 보유자, ③60세 이상자,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④고위험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일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①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출근 전 확진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후 7일간 격리 조치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사업주는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한다.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고14)”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하고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 사업주(방역관리자)는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확진자의 복무 관리자에게 통보 조치하고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방문한 고객 중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22.2.9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2.9~)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

우선순위	접촉자 조사 대상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상기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접촉자 대상자별 관리방안>

1순위: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
- ②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격리대상 접촉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 ③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 접촉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격리 가능하되, 집단발생 시에는 접촉자 간 격리공간의 결합 또는 재배치 지양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
 - * 확진자의 동거인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검사대상 문자 받은 경우 PCR 검사 가능
 -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2순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15분 이상 대화 등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 ②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회 실시
-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3순위: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 ②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
-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 접종자 대상자별 검사방안

¶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만 60세 이상) PCR 검사 우선순위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 가능

¶ (만 60세 미만)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PCR 검사 실시, 증상이 없는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자택 또는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PCR 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 (자택 검사 시) 검사결과 양성 키트 밀봉·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알리고 PCR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검사 시) 검사관리자 안내에 따라, 지체없이 PCR검사 실시

【주의사항】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 시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

※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의 경우 조기 진단·치료가 중요하므로, 진단검사 적극 실시 독려

②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 사업주는 확진환자 등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확진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7일간 격리하고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출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주의기간 수칙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

- 사업주는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연차사용 등에 대해서 사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재택근무)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 → 코로나 특수성(전파가능성 등) 고려 협의로도 가능('21.9월, 재택근무종합매뉴얼)

* (연차) 별도의 유급병가 부여는 가능, 무급휴가(휴직) 강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발생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사상 불이익/퇴사 강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부당해고 등). 다만, 근로자의 감염 이유·경위가 회사의 방역·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 가능

* (따돌림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4 회의 · 교육, 모임 · 회식 및 출장 관리

①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소규모(1-4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중규모(50~299미만): 접종완료자 로만 구성 ■ 대규모(3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물, 무알코올 음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제공)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장소별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 ■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 띄우기, 원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예외사항: ❶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자, ❷ 18세 이하('22.4.1.이후 변경가능), ❸ 완치자, ❹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 등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 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 2차 개편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관련 행사*”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 인원 제한 없음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원회, 방송제작 및 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로만 구성하여 실시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 다만,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②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 전국 6인까지만 모임가능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전국 6명까지만 모임 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 이용 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 예외사항: ❶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❷ 임종 등

③ 출장

○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입국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 요령]

여행경보단계	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 남색경보	신변안전 위험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 황색경보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 적색경보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 - 흑색경보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최신안전소식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게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① **사무공간**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문 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3-4판)」(참고14) 참조

② **기숙사·휴게실 등**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실내 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가구·비품, 침구·수건 등을 청소, 소독 및 세탁을 통해 청결히 관리한다.
 -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스위치, 세탁기 표면, 가스레인지 손잡이, 책상, 의자 등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③ 구내식당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는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한다.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예시) 부서별로 달리 운영(A부: 11:30~12:30, B부: 12:30~13:30)

④ 통근버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근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 음식물 섭취금지(물, 무알콜 허용) ■ 차량 정원 초과 금지 ■ 탑승자 확인(소속 근로자만 탑승)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시 변경사항 적용	

6 위생 및 청결 · 소독 등

① 방역 준비

-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보호구(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품을 충분히 준비한다.
-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소독제,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의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여 비치한다.

② 방역 교육 · 안내

- 노동자가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을 관리하도록 안내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는 자제한다.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 방안*을 홍보한다.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③ 방역 관리

- 기본적으로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한다.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1일 3회 이상 환기한다.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며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협력업체 포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알코올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 배송 및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사무실에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밖에서 응대한다.

1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

-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예시)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

2 기본 방침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및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한다.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단계별 유연근무·휴가 등 활용 기준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 콜센터 등은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다.

3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73천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30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0.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❶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❷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4 가족돌봄 휴가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생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은 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한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참고22) 참조

1 Q&A(고용노동부)

①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30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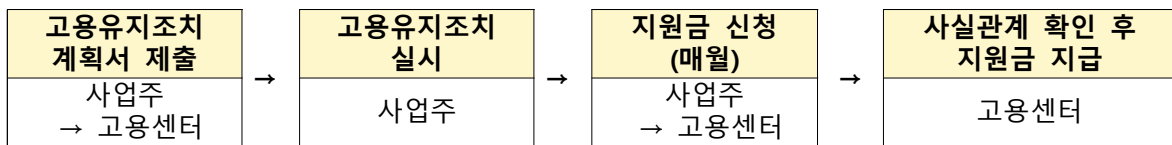
②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 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 (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1/2 또는 2/3
-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10, 대규모 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 조선업(~22.12.31.),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 14개 업종(~22.3.31)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가능합니다.
- *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유흥업소 등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8.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1.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대상은?

-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E-9/H-2 외국인근로자로서 2021.4.13.부터 12.31까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추출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3.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처리 결과를 받아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연락처가 없는 경우 안내 불가)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관할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 (처리절차) ①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추출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고용부

→법무부) ②체류기간 연장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장조치(법무부) ③연장결과 회신(법무부→고용부) ④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안내(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부→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5.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외국인고용관리앱, 관할센터의 유선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EPS홈페이지(www.eps.gp.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수 있고
- 외국인근로자는 EPS홈페이지(www.eps.gp.kr)와 외국인고용관리앱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PS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지원

6.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연번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번역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번역자료*를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에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생활 수칙,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등

**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공지사항

|| 참고 자료 ||

참고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중앙방역대책본부)('22.2.7)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 요약본 >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 료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 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 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분류	1.24. 기준	2.7. 기준
확진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조사대상	전수 기초역학조사 (<u>심층역학조사 생략가능</u>)	<u>변경 없음</u>
격리관리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 기간 : 확진일로부터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 기간 : 증상발생 후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3차 접종 당일 효력 발생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미구분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름(변경 없음)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국내 접촉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격리대상	가족, 60대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고위험기저질환자 :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분류	1.24. 기준	2.7. 기준
	면역억제질환(예: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결핍), 고혈압, 겸상 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등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격리기준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사*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사)로 조정 가능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사*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사)로 조정가능
격리기간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능동/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차 24시 (=8일차 0시) *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재택치료자 동거인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7일 격리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14일 격리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격리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
-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
 -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절차 예시

업무내용		업무절차
	① 확진자 확인/안내	○ 확진자 본인이 자율 보고로 확인 ○ 확진자에 복무관리 안내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공지
	②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	○ (주관) 사업주 및 방역관리자 ○ (대상)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기준 마련 * 기숙사 등 동일 공간 생활자, 마스크 벗고 식사 및 15분 이상 대화한 자, 동일 공간(부서) 근무자 등
	③ 접촉 명단작성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접촉일, 검사일 기입 ○ 보건소 요청시 접촉자 명단 제출
	④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 접촉자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주기·횟수 차등 - 최초 인지 이후 2~3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실시 ○ 음성시 업무지속, 양성시 PCR 검사

□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 시 관리기준 예시

- <사례1> 기숙사 내 1명 확진자 발생 → 확진자 공간 분리, 접촉자 공동격리감시 가능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관련 FAQ

<중앙방역대책본부, '22.2.12.>

1 공통 부분

Q1. 2월9일 시행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의 기본방향과 주요 변경사항은?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합니다.
- 주요변경사항은 접촉자 대상 및 격리기간 변경, 확진자 조사방식 변경(자기기입식 조사 또는 확진자 진술기반 조사) 등 입니다.

Q2. 보건소 관리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 보건소 관리는 확진자와 접촉자 중에 확진자의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이용자)의 격리 및 감시만 해당됩니다.
- 이외 시설·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지침)에 따라 관리하시거나, 자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3. 자율방역 원칙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장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체에 대해서 관리했다면, 변경 기준에 따라서 보건소 관리대상 및 기준이 축소됩니다.
- 보건소 관리 범위 외에는 각 사업장 별로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 사업장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

② 확진자 조사 및 관리

Q1.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조사 및 공지는 필요하지 않나요?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진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전략 변경 취지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 24일부터 보건소에서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한 사항도 참고 바랍니다.

Q2.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 확진 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접촉자 조사 및 관리

Q1. '격리대상 접촉자'의 정확한 의미는?

- '격리대상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입니다.
- 격리대상 접촉자는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 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이외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아님.

Q2. 접촉자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하고 6개월(180일) 이내인 경우, 격리대상 접촉자인가요?

-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입니다.(“22.1.24부터 적용)

Q3. ‘적절한 보호구 없이 2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의 관리방안은?

- 보건소 관리대상자가 아니며, 사업장별 자체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의 방역관리자가 접촉자로 분류하여 대응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대상에 대하여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하되, 신속 항원검사(개인용) 실시를 권고합니다.

Q4.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자의 접촉자는 접촉자로 분류하는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며,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의 접촉자라도 개인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였으면(진술기반)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Q5. 사업장 내 구내 식당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옆에서 식사를 하던 동료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 사업장은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Q6.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7일 격리를 해야하는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해제 후 3일간의 추가 조치가 있나요?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7.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인 '수동감시' 대상자의 근무형태는?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PCR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음성 확인 후에는 출근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 준수를 권장합니다.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Q8. 전파 방지를 위해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와 적정 대상 및 주기는?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조사·관리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인지 이후 2~3회 검사 실시를 권고합니다.
- 예방조치를 위한 주기적 검사는 사업장 별 자체 기준을 정하실 수 있되, 사업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신속항원검사 과정과 결과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2022년 1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가이드라인 작성 기본방향

-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폭증하여 인력·물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업종, 규모 등)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또한 각 사업장이 기존에 작성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이 있는 경우, 기존 BCP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수립 배경

1 BCP 정의 및 작성 배경

-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 작성 배경 : 전파력과 재감염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化 시 국내 확진자 및 접촉자 폭증이 예상*되고 있음
 - * (해외) 이전 최고점 대비 2~5배 이상 확진자 증가
 - * (국내전문가)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예측
 - 이에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의 유지가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장별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 시 참고자료로 제작

2 감염병 및 코로나19의 개요

1. 감염병

- 감염병이란 세균·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섭취·호흡·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전파
- 감염병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
 - 정규직원·임시직원·하청업체 등 인력 부족(감염병에 의한 격리, 자녀 등 가족 돌봄, 공공장소 회피 등)
 - 고객의 주문취소 또는 해외 수출 등 절차지연
 - 원부자재 공급 중단 등 공급사슬의 문제
 - 소독제·마스크·배달서비스 등 특정 물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 출장·회의 등의 제한

2. 코로나19

[정의]

-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 (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임상적 특성]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0-3판))

- (주요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대부분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 요인) ①65세 이상, ②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③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④암, ⑤비만, ⑥장기 이식, ⑦흡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 상황]

- (코로나19) 1주차(1.3.~1.9.)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50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 오미크론 우세종化
* (52주) 확진 9,768,675명 → (1주) 확진 15,453,286명 (+58.2%)
- (오미크론)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에서는 최근 8주간('21.11.24.~'22.1.15.) 총 5,031명 오미크론
확진, 바이러스 점유율 12.5%('22. 1월 1주)에서 → 50.3%('22. 1월
3주)로 급증

Ⅱ. 사업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 감염 예방 조치

- ◆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여**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평시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 ◆ **관련 지침·규정을 확인**하고 시설 소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방역관리자 등 감염병 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치 중인 방역조치를 재점검**하여 핵심업무 지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 추가

1.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사항

- 사업장 내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함
 - 직원의 일별 건강 상태 확인 및 감염 예방 홍보 등
- 평시 재택근무제도와 탄력근무제도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함
 -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시 핵심업무 지속 수행을 지원
- 출근 중 감염의 우려가 있을 시를 대비한 **대체근무지 지정 고려**
- 대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비대면회의 활성화하는 등 **업무과정 중 접촉 최소화**
- 사업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대상자 대상 백신 접종 지속 권고**
- 사업장 내 **출입자를 관리**하여 비상시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근무장소 청결 유지

- 사람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매일 소독**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음**
- 매시간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하여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함

< 사업장 관리 요령 >

내·외부 접촉 최소화	- 원격회의(화상회의 등),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출장·회의·워크숍·교육 등 축소 운영 - 사적 모임 자제 및 사업장 내 휴게 공간에서 모이지 않도록 함 - 대면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한 큰 회의실을 선택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악수 또는 포옹을 삼가고, 주기적 환기 및 회의시간 단축 - 방문객 등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투명 가림막 등 설치 - 콜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사업장에서는 칸막이·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교대근무를 통해 동시 근무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별도의 조치 필요
위생 실천방안 홍보	- 모든 사업장의 출입소, 사위실, 세면대 및 공공장소 마다 안내문 부착 - 브로셔, 뉴스레터, 이메일, 직원 게시판, 급여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기 동안 손위생 및 청결한 주변 환경 유지 등의 중요성 홍보 - 기관 내 방역안내 홍보물 최신화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조)

2. 개인 및 사업장 위생·소독 관리

-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
-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소독 철저**
 - 권장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 성분마다 다르므로, 제품별 설

명서에 따라 선택

-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허가한 소독제 사용(<http://ezdrug.mfds.go.kr>)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 시행

< 소독약품 안전 사용 수칙 >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의심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 확진자 발생 시 대응원칙을 세우고 기관 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의심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상담 등 사업장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른 신속 조치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심 · 확진자 발생 시 관리

- 의심·확진자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응함
-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기관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 사업장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PCR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실시 검토 및 준비
- 환자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기관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공지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하여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감염병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응요령을 개정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

의심 환자	(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방문객 발생 시, 즉시 사내 감염병 관리자(의료팀 등 사전 공지된 신고부서)에 전화 신고 (검사) 기관 내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격리)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결과는 사내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접촉자) 의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근 및 동반식사 지양 (소독) 의사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확진 환자	(공지) 직장에서 확진환자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관 내 모든 근무자에 알려야 함 (기관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등 비상근무로 전환, 필요시 보건당국에 제출

Ⅲ.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1 개요

1. BCP의 주요 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규정
② 사업장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핵심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함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혼란을 최소화 함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
④ 인력운영 방안 마련	인력 부족 시 핵심업무 지속 방안을 마련
⑤ 소통 체계 구축	사업장 내외부와의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집중도를 높임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정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노동자에게 행동지침 등 전파
⑥ 사업장 내 확산 방지조치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내 확산 방지 조치사항 등 마련함
⑦ 복구 등 사후조치	사업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시 혼선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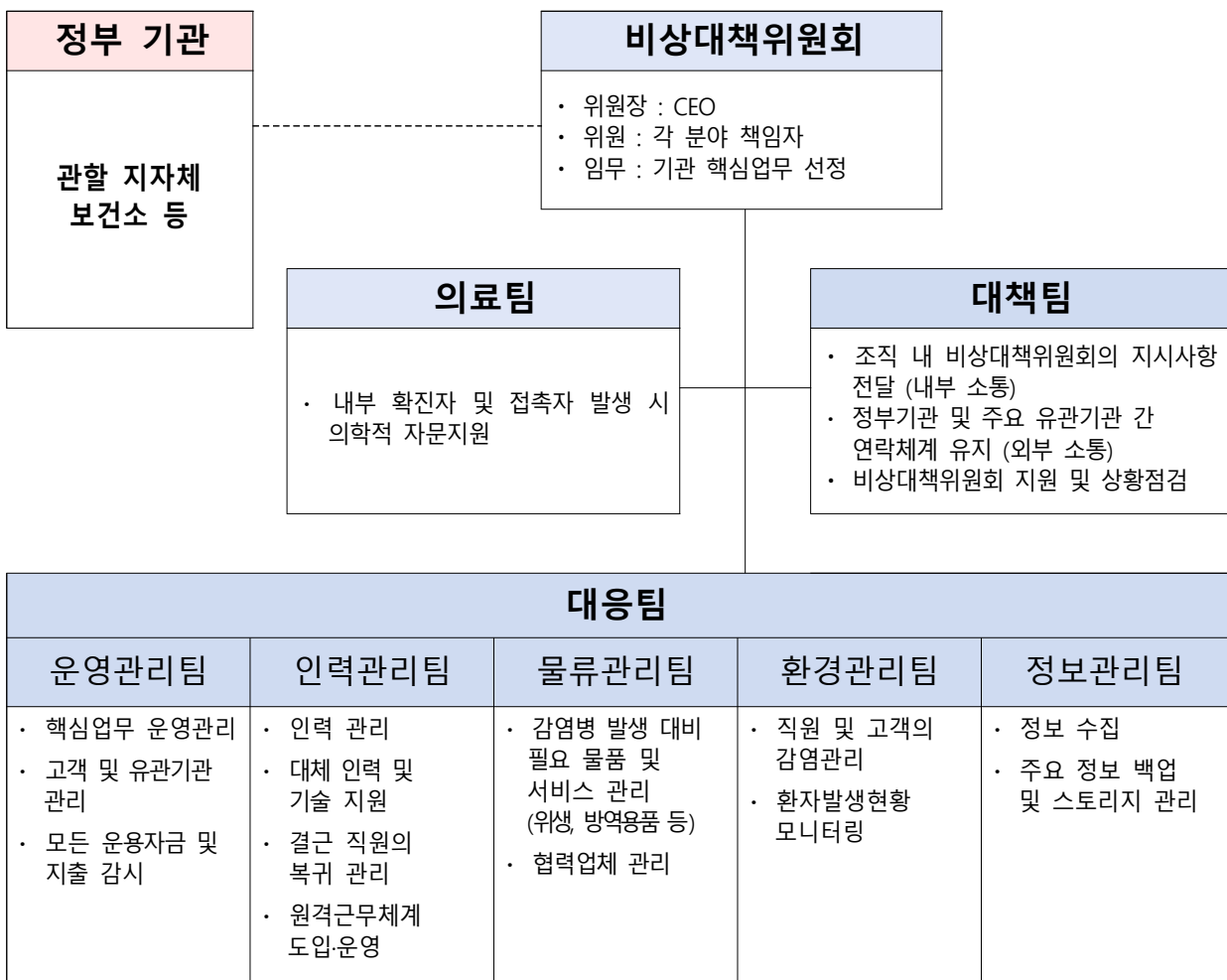
2. 실행 시기 :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증하여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점
- 방역당국이 각 부처의 필수 기능유지를 위한 BCP 작동을 요청하거나
 - 사회기능유지를 위한 핵심업무 수행 인력 다수가 감염 등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2

사업장 대응체계 및 조직

-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한 각 사업장 비상조직체계 가동
-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비상대응조직을 활용하거나 신규 조직 구성 가능
 -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비상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



- 업무 대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 숙지와 상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개인별 임무관리카드 작성 및 휴대·비치

3 사업장 핵심업무연속성계획 수립

- ◆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업무를 선별, 우선순위 업무를 선정하고, 비필수 혹은 단기 중단 가능 업무는 축소
- ◆ 핵심업무 위주의 업무지속계획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돌발 상황과 피해 최소화

1. 우선순위 핵심업무 선정

- (목적) 사업장 내 다수 확진자 등 발생으로 일부 업무의 중단 혹은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지속하여야 할 업무를 선정
- (고려사항) 인력, 정보, 자원, 장비, 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시행
 - 사업장의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시 근로자 측(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절차

구분	단 계	활동 내역(예)
1단계	우선순위 평가 * 비상계획 가동준비	· 사업장 핵심업무 중심으로 방향 개편 · 우선순위 업무 선별 (중단 후 복구 곤란 여부 및 최대 중단가능 시간 등 고려)
2단계	자원 (인력,물자 등) 배치조정 및 시행 전 고려사항 검토	·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모색 · 축소 혹은 중단업무 지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물자 확보 · 인력, 자원, 시설, 감염관리 등 계획 실행을 위한 점검
3단계	업무연속성계획 시행	· 상황에 따른 핵심 업무연속성계획 가동 · 정상 복구 작업을 위한 활동 · 비상계획 가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대응 등
4단계	평가 및 환류	· 비상가동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할지 · 가동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수정 계획 반영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인력,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1. 주요 업무 및 인력

- 사업장 내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별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 사업장 내 각 업무별 개인별 현황을 정리하고 핵심인력 파악을 위해 대체인력 투입 가능 여부를 결정

2. 가용 자원

- 사업장이 보유 혹은 도입가능한 필수자원과 기타자원의 종류·필요량 및 현재의 비축량을 파악 (예 : 기계장치·설비, IT·데이터, 통신, 외주·공급 협력사, 기타 인프라 등)
 - 다만, 감염병 확산에 따라 수요 증가 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자원은 별도 명시하여 관리함
- 사업장 내 핵심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백업하여 보관·관리하고 향후 업무 복구 시 접근가능하도록 조치
- 최소 8주 이상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핵심업무를 위해 필요한 물자의 필요량을 산정하여 비축
 - 한 곳 이상의 자재 및 물품 업체 지정
 - 국내 상황의 악화에 대비하여 국외 공급업체로 대상 확대

3. 가용 자원

- 사업장 내 가용 예산과 조달 가능한 액수, 조달 방법을 파악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예산과 액수,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파악

4.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생·청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위생·청결 물품의 필요량 파악 및 비축
(예 : 비누,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티슈, 개인보호구, 소독제, 청소 물품 등)

□ 인력 운영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재택·원격·교대 근무 활성화 및 대체 근무지 지정 등 조치
 -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대체근무지 지정 등 밀집도를 줄이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
 - 치료·격리 후 복귀 인력에 대한 업무배치 등 고려
- 종사자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 핵심업무 종사자의 결근에 대비한 대체근무조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대상자와 부서장에게 공지
 - 대체인력의 부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곤란한 경우 외부인력 도입을 통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 활용방안 고려
 - 무증상(경증)확진자 혹은 자가격리대상자는 ①가급적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②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조치 하되, 재택근무와 대체인력 투입이 곤란한 경우, ③별도의 비상인력 운영 기준* 적용 검토 고려
 - * 격리기간 조정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과 협의 후 조치
 - 상기 조치로도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단기간 핵심업무의 부분적 중단 및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
 - 다만, 상황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당국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비어를 막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 전 직원이 감염병 대응에 동참하도록 감염병 기본 지식과 행동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1. 사업장 내·외 비상연락망 운영

- 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의 건강상태확인 방법이 있다면 운영상황을 재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별 점검 가동
 - * 일별 직원 근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핵심업무 지속에 미치는 영향 고려
 - 동거 가족 확진자 혹은 재택치료자 발생 시 개인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업무형태를 사전에 정하여 발생 시 혼선 최소화
 - 업무형태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든 직원에 사전 공지
 - * 재택근무 혹은 대체자 지정 시 기간 및 복귀 전 진단검사 여부 등
 - * 업무상 출근이 필요한 경우 감염여부 확인 방법 및 근무 시 주의사항 등
- 거래처, 협력기관(물품, 서비스 등 공급업체), 고객 등 직장 내외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지역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 등의 연락망 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상연락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하여 모든 직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소통 유지

-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직 내 확산 동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유언비어를 방지
 - 발생 정보 제공의 목적은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제공
- 확진자 다수 발생 시 내부 인트라넷망 등 비접촉식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 간 접촉 최소화
 - 소속 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 (청소·식당 노동자, 물품 운송기사 등 협력업체·과건·용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대상

3. 직원 교육

- 직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숙지사항, 기관의 대책, 자기관리지침 등을 전달
 -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되 주기적 전달을 통해 구성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적절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등 핵심방역조치 준수 강조

4. 대국민 홍보

- 핵심업무 연속성 유지에 따른 일부 업무의 축소 혹은 중단 사항을 국민 등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사전에 신속하게 안내하는 방안 고려
 - 업무의 중단 및 축소 기간, 그에 따른 대체 방안 등

- ◆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기존 비상조직체계를 복구 활동조직으로 전환하고, 복구 진행 예정표를 작성
- ◆ 복구에 필요한 자원, 비용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 배정
- ◆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에 복구상황 알림

□ 업무 복구 체계

- 감염병 발생 후 운영되던 비상조직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개편
- 복구 목표시간과 목표 복구수준을 설정하고, 복구 전담팀을 구성
(예 : 소통팀, 유관기관지원팀, 인력관리팀, 자원팀, 설비팀, 재무팀 등)하여
팀별 업무를 부여
- 복구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복구팀별 복구활동계획과
필요자원 및 비용 등을 분석

① 비상대책위원회

- 핵심업무 선정 등 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 비상대책위원장: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
- 비상대책위원: 각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근로자 등

② 대책팀

-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사항 전달 등 조직 내부 소통
- 정부기관,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등 외부 소통
-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③ 의료팀

-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의학적 자문 및 대응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
- 기관 내에 전문 의료인이 없는 경우, 인근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자문

④ 대응팀

- 운영관리팀, 인력관리팀, 물류관리팀, 환경관리팀, 정보관리팀 등 분야별 업무연속성 확보 계획을 시행

분 류	임무와 역할 (예)
운영관리팀	• 핵심업무 운영 관리 • 고객 및 영업점 관리 • 모든 운용자금 및 지출감시
인력관리팀	• 인력관리 •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 결근직원의 복귀 관리 • 원격근무체계 도입·관리
물류관리팀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관리(위생, 소독용품 등) • 핵심업무 수행 필요 물품 관리 • 협력업체 관리
환경관리팀	• 직원 및 고객 감염관리 및 서비스(방역관리자) • 환자 발생 모니터링
정보관리팀	•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첨부 2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시 고려사항 [출처 :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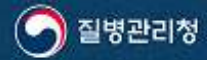
고려 요소	BCP 가동 전	BCP 가동 중	BCP 가동 후
거버너스 및 조정	- 위험 및 취약시설 파악을 위한 사용 가능 자원 평가 - 비상대응팀 계획 및 감독 팀 구성 - BCP 계획 마련 및 시뮬레이션 시행	- BCP 계획 활성화 - BCP 조직 계획 실행에 대한 감독 제공 - 사전 정상화 시 계획 비활성화	- BCP 실행에 대한 평가 구성 - 필요시 BCP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대한 감독 제공 -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 제공
정보 관리	기록 및 배포 계획	- BCP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위한 지표 수립 - BCP 가동 진행상황 정기적인 상황보고서 생성	- 교훈과 모범 사례를 문서화 및 배포 - BCP 가동 중 개선 사항 추적
인적자원	- 직원 교육 계획 - 적절한 인센티브 접근방식 선별	수행 가능한 직원 배치 (예: 신규 교육자 퇴직자 등)	수행 직원 참여 평가
필수용품 및 장비 (예: PPE)	- BCP 가동을 위한 필수용품 공급업체 사전 분류 및 마련 - 재고파악 - 공급/유통망 관리 담당자 추가 교육 검토	- 필요시 각 부서 및 추가 공급 - 소진시, 대체용품 수급 - 방문객 및 외부출입자 대비용품 비축	재고파악 및 마련
시설	- 사전에 추가 시설/ 공간 검토 및 마련 - 시설/공간의 위치 고려 (예: 의심환자 격리 장소)	필요에 따라 추가 공간 설정 마련	업데이트된 계획에서 현재 기반 시설 반영
재정	BCP 가동을 위한 가용 재정 확보 및 마련 방안 검토	BCP 가동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 실행	계획 평가 및 수정을 위한 자금 및 기타 자원 제공 계획
의사소통 및 협력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비상 시 소통 구축을 위한 사용가능 플랫폼 서비스 검토 - 관계기관 등과의 참여 소통 서비스 구축	-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 - 실행 시 관계기관 참여 - 서비스 연속성 및 활용을 위한 메시지 전달	피드백 및 환류 (관계기관 참여)
필수 서비스 제공	기관별 업무 중 필수 서비스 제공 구분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시행 (예: 원격 의료)	수정보완 프로세스와 일상적 기능 충돌 방지
보안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보안 경고 파악 - 보안조치 실행	필요시 보안 문제 해결 위한 추가 보안기관 탐색	계획의 보안 조치 업데이트
취약계층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파악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특별 주의	추후 형평성에 대한 모범 사례 및 교훈 포함

첨부 3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예시)

주요 내용	완료	진행	미착수
1.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 조치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평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예방 조치를 마련하였는가?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접촉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개인과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대응체계			
비상 대비 조직을 구성하였는가? (전담반 구성 여부)			
- 각 조직과 팀, 구성원의 개별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자문해 줄 보건 의료인력은 확보하였는가? (내부 : 산업보건의, 산업간호사 등)			
- 내부 의료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에 전담 자문인력을 확보하였는가?			
3. 핵심업무 지속계획 수립			
사업장별 핵심업무를 선정하였는가?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전 고려사항은 검토하였는가?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재택근무, 탄력근무, 대체근무지 지정 등 비상 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하였는가?			
-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비상 시 대체조편성 등 업무수행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인력 부족시 대체 방안 혹은 추가 확보방안은 고려되었는가?			
- 격리 또는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는 파악하였는가?			
- 보유물자의 비축분은 별도 고려를 하였는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은 파악하였는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은 관리하고 있는가?			
4. 연락망 구축 및 소통			
조직 내·외에 비상연락망은 마련하였는가?			
비상 시 가동가능한 소통망을 마련하고 가동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가?			
직원을 대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중단 및 축소 업무와 관련한 외부 소통계획을 마련하였는가?			
5. 복구 및 사후조치			
일반 사업 복구를 위한 절차는 마련하였는가?			

2022.2.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1. 고용유지지원제도

-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④30일 이상 실시, ⑤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⑥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19인 이하),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④30일 이상 실시, ⑤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⑥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⑦근로자대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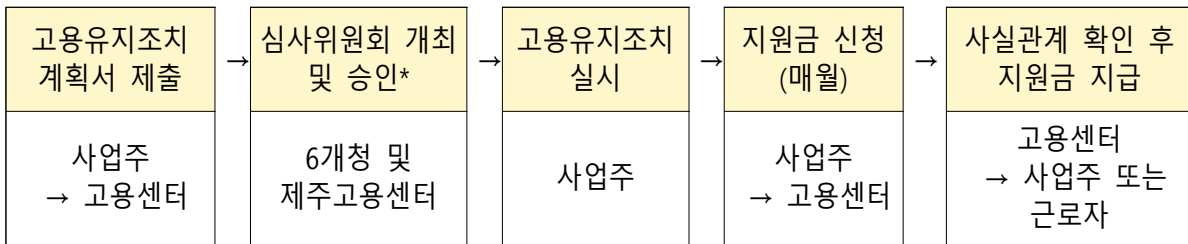
*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 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초일~말일 15일 이상 활용)

-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와 소정근로시간 초과일수를 합산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유형 >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④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지원 기준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임산부·초등 돌봄 근로자)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자녀 돌봄 근로자의 증빙자료 첨부 시 재택근무 지원 우선 승인

4.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 (개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❶ 고용센터에 사업신청·계획서 제출(구축 예정 인프라 견적서 첨부)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❷ 사업계획 승인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❸ 취득장비 사용의무기간(3년)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최대 3년 이내, 사업장 자율로 결정) 준수

*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 시설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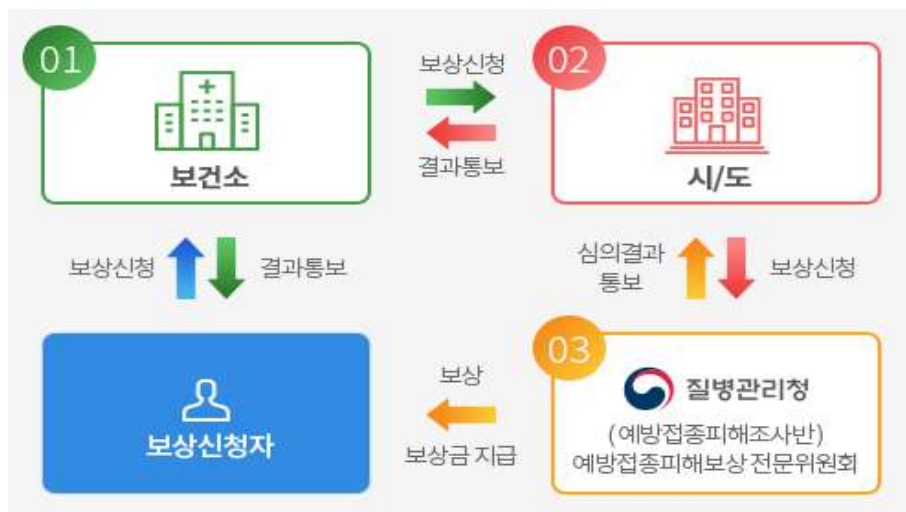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21.05.10. 보도참고자료「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붙임16)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같음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참고 6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1판, 22.2.10.)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1. 사례 정의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2.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 확진환자 대응방안

1. 확진환자 관리

가. 격리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격리통지를 실시하고(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

- ▶ 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통보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기간
 -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변경통보
 -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통보(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동일)

나. 환자 초기 분류

-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선별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함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초기 분류는 확진자 조사서와 선별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환자관리반이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 시·도 환자관리반은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낮은 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가능하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 절차를 진행함

※이하, 병상 배정 원칙,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1판, 22.2.10.)을 참고하시기 바람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로,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 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합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가. 접촉자 조사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해외입국시는 검역소)는 접촉자 조사 실시
- (대상)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조사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실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수 또는 이관 확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조사기간)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

※ 감염원은 필요시 조사

나.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 (용어정의) “예방접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원칙)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 예방접종자 구분

- ① 1차 접종자 : 1차 접종을 한 자
- ② 1차 접종완료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③ 2차 접종자 : 2차 접종을 한 자
- ④ 2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인 자
- ⑤ 3차 접종자 : 3차 접종을 한 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 ⑥ 3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 단, 접종증명의 효력은 3차 접종 후 즉시 인정됨

▶ (2차 접종완료자 예시) 5.1일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5.16일(14일 경과) 0시부터 접종일 이후 10.28일 (180일 경과) 24시까지

▶ (6개월 경과 계산)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구분	대상자
수동감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격리조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개별격리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수동감시 예외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감시기간(능동 및 수동) 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에 감시 해제
- 기타 시설(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외) 확진자 발생 시, 시설별 방역관리자가 대응하며, 신속항원검사(RAT) 2회 시행

▶ RAT 2회(접촉자 분류 직후, 3일 차)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 등교 제한 권고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다.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1)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

- 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자가격리 방법

- (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공동격리) 장애인·영유아 등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격리장소 외부인 방문)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3)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
 -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함

- (시험응시, 투표)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문서)에 따라 조치
-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 적용
 - *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4)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은 가구 내 최초확진자의 검체 채취일(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 단,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

▶ (격리기간 예시) 확진자 1명(검체채취일 2.9일), 격리대상 동거인 2명인 경우
 - 확진자 격리기간 : 2.9~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2명 격리기간 : 2.9~2.15. 24시 ☞ 확진자와 동일

-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

▶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보 2.10일), 격리대상 동거인 (검체채취일 2.10일, 음성확인 2.11일)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확

진자와 동일

-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 밀접접촉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 (2차 격리해제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 ▶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
 -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86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 코로나19 콜센터(1339 및 지역번호+120)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❶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❷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مليسيا),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 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دو),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កម្ពុជា), 미얀마어(မန်မာ),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case-patients from isolation.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			
발행일: (예시) 20 .○○.○○ △△ 보건소장 (인)			

- ☐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됨

<참고> 최근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조회·모임]

- ☐ (사례1) 매일 아침 15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조회하고 체조 진행
☐ (사례2) 직원 수십명을 모아 사내 족구 대회를 개최

[회식]

- ☐ (사례1) 회사 인근 식당에 10여명이 모여 단체회식

[사무실]

- ☐ (사례1) 소규모 업체가 모여있는 아파트형 사무실의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여 관리실에 항의해도 방치
☐ (사례2) 출입자 발열체크 없이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

[구내식당]

- ☐ (사례1) 테이블 간 거리도 좁고, 칸막이도 일부만 설치
☐ (사례2) 30여명의 근로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3시간 넘게 단체회식을 강행
☐ (사례3) 식당 조리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조리과 배식

[공사장·함바식당]

- ☐ (사례1) 근로자들이 목토시만 착용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례2) 출근 시간에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관리자가 방치
☐ (사례3) 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에서는 명부작성, 체온측정, 일회용 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 없이 손님을 받아 신고

□ 새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웹포스터

질병관리청 발행일 2021.1.25.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코 로 나 1 9 , 함 께 라 면 극 복 할 수 있 습 니 다

□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손 쉬운 방법

올바른 손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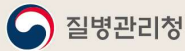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발행일 2020.10.15.

□ 코로나19 검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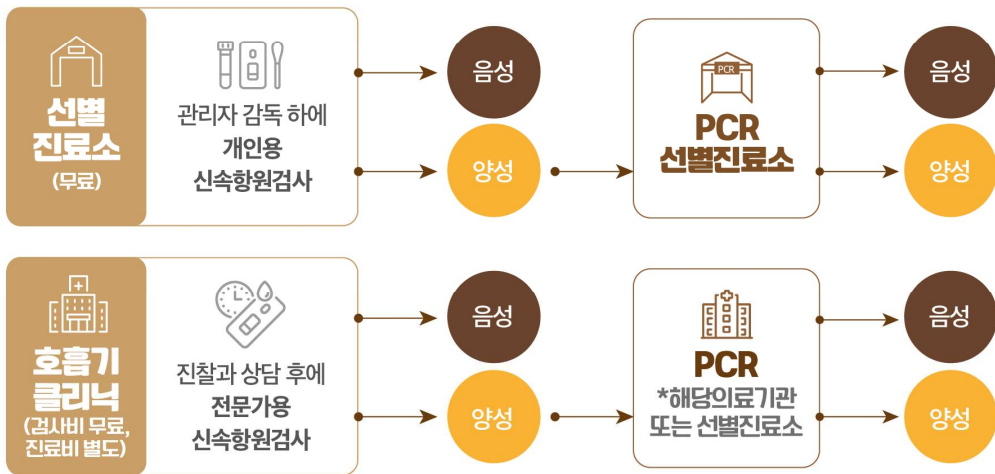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군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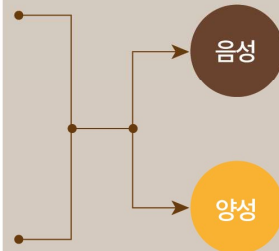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무료

의료기관 운영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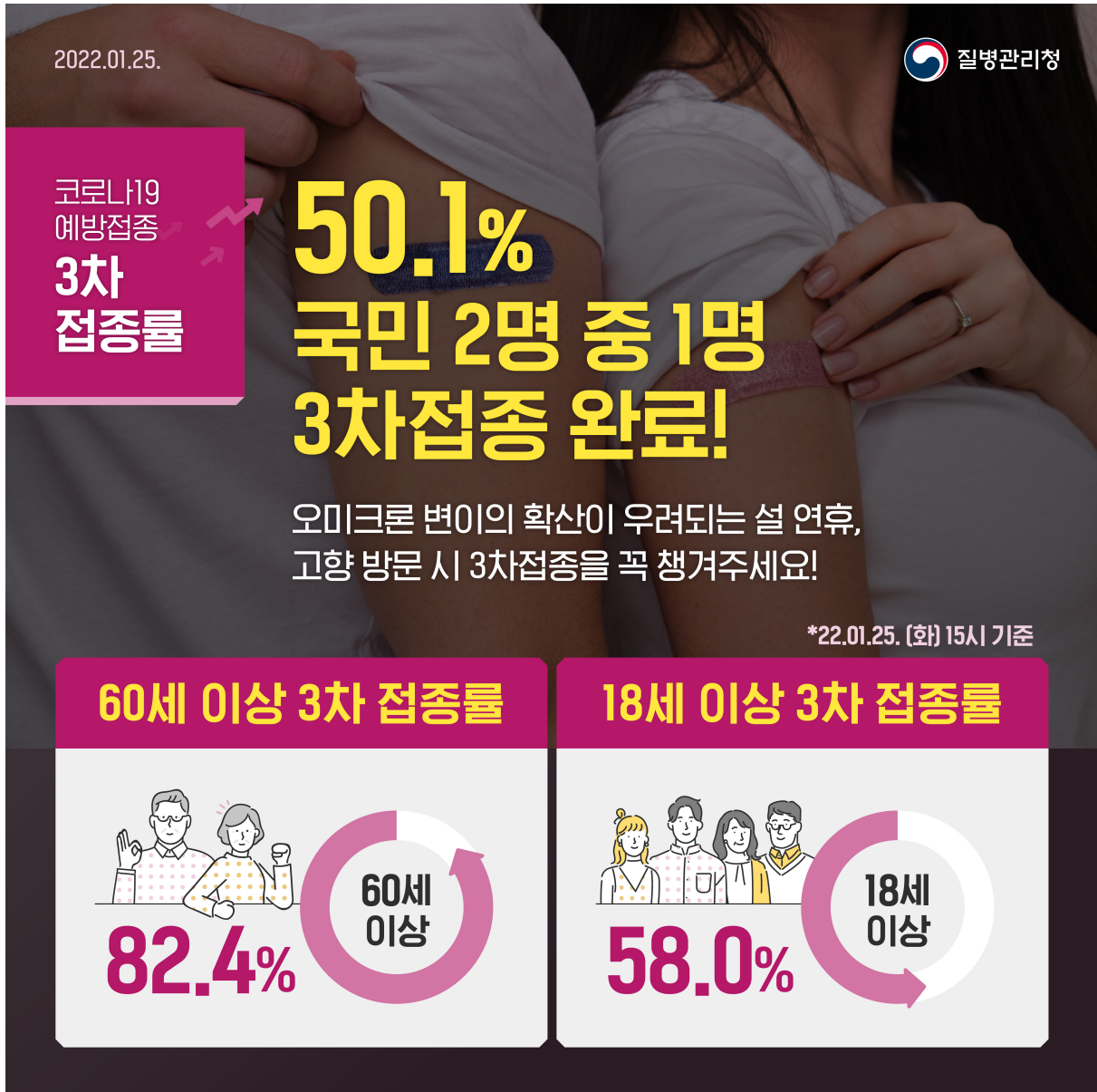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 강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포스터



참고12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포스터 3종(국문)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주의해야 할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포스터 3종(영문)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주의해야 할 경우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업현장은 산업용, 일반국민은 보건용, 의료인은 의료용”
용도에 맞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형태





[참고]
보건용 마스크

종류별 용도

- **특급** 석면, 베릴륨 등 발암성 물질 노출 작업
- **1급** 용접 등 금속흡이 발생하는 작업
- **2급**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사용지침

1/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분진작업 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배기밸브가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해 바이러스 등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작업 내용, 분진 농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방지용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참고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실 -> 외국인고용지원)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I 개요

1.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
- 본 지침은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법령의 규정을 준수
 -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등 **[붙임 1]**

2.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적)** 소독의 개념과 효과, 환경 소독제 종류와 유의사항,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올바른 소독방법, 대체 소독방법관련 정보 등 기타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
- **(적용 범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 시설 관리·운영자, 개인 및 소독업무 대행 소독업자 및 예방적으로 환경 소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적용 상황)**

- **(환자 이용 장소 방역)** 환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준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3. 개념 정의

- **(청소(세척), Cleaning¹⁾)**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
- **(소독, Disinfection²⁾)**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짐
- **청소 및 소독의 효과**
 -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 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
 -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1)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참조

-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감염력 유지 기간】

- 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
- ② (감염력 유지 기간³⁾)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4. 환경 소독제의 종류

- (환경 소독제⁴⁾ 종류)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환경부 소관이며,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 제품(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및 신고 제품(일반 살균제) 품목으로 관리

♣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 손소독제(의약품), 의약품 및 식품관련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승인 제품, 소독업자 방역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해야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사항 준수 필요

3)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The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

4) 환경 소독제는 물체표면 또는 환경에 대한 소독용이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손소독제 등의 의약품,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임

【승인 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승인소독제는 단단한 표면 및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 소독용
-(WHO) 자연 환경, 거리 등을 소독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 할 수 있음
- ② 분무/분사 및 연무형으로 승인(표면을 닦을 정도로 도포) 되었더라도 닦는 소독 권고
- ③ 초미립자 분사·살포용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없음

- (신고 제품, 자가소독용)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환경부에 신고 →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 (사용관련 문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

5. 대체 소독 방법의 국내·외 현황

○ 국내 현황

- 현재 비(非) 의료용 환경소독 관련 장비의 소독 효능 인증 기준 미비
 - *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만 충족하는 제품 목록은 국가기술표준원 (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 환경부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장비를 활용하여 인체에 직접 분무/분사가 가능한 제품은 없음
 - * 인체용 소독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함

○ WHO

- 비(非) 의료환경에서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 *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임
- 소독 터널, 캐비닛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환자의 비말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

○ 미국 CDC

-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II 소독 시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 (소독 도구) 가능한 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 시행

- 환기 시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및

[붙임 8]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2. 소독 전 준비사항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일상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 90%	1분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는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지정)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8)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 것으로 착용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비누 손 세정 → 마스크 제거 → 비누 손 세정 → 새 마

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증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소독 시 체크리스트(예시)】	
☐	(소독 범위 설정) 접촉이 잦은 표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이동 동선 등
☐	소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 제품 사용
☐	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사용법 준수 (유효농도, 접촉시간 등)
☐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및 청소용품 준비
☐	소독 전, 눈에 보이는 오염된 표면을 물과 세제(또는 비누)로 청소 실시
☐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실시
☐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기
☐	충분한 환기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청소·소독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야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소독제 희석액 준비

-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필요시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 x 0.05 ÷ 5 = 5ml

【청소·소독 순서(예시)】

- ① 침대 시트, 일회용 커튼 등을 제거
- ② 모든 물건 또는 가구 표면을 청소·소독
- ③ 창문, 창틀의 청소·소독
- ④ 침대 및 매트리스 청소·소독
- ⑤ 바닥 청소·소독
- ⑥ 침대시트, 커튼 등을 새것이나 소독된 것으로 교체

- **(소독 전 처리)** 표면이 이물질(유기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② 소독제를 적신 천(형걸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형걸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형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닦는 방법 권고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내릴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후에는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 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 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

2. 세탁 방법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 재사용해서는 안 됨

*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

-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 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 (소독제 목록·정보)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 <http://ecolife.me.go.kr>

-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

*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

-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
- 세탁 후에도 일회용 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 지침 준수

3. 유의사항

-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서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

- ▷ (카드뉴스) 기관홈페이지(www.kdca.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
- ▷ (영상) 기관홈페이지(www.kdca.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IV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 코로나19 유행 시 지역사회 일상 소독방법을 제시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 ② 환경부에서 승안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한 후
-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표면 소독은 500ppm, 화장실 소독은 1,000ppm을 사용하며,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청소 방법) 세제(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 청소만으로도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하나, 추가로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형걸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형걸 등)으로 표면을 닦음
 -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횟수) 하루 1회 이상

【소독 부위 예시】

-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

☞ [붙임 7], [붙임 8] 참조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 등 이용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함

- **(화장실)**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후에는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붙임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 가능(소독하고 하루정도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 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 (구역)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환자 퇴실 후 시행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 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안내 (‘20.3.16.)
의료기관 (의원급)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 기관 실무안내(‘20.2.20.)

1. 기본원칙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를 집중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지도

※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 실시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방문 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이하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 및 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2. 사업장 지도방법

① 사업장 방문지도

- 감염병 예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관리가 필요하거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통상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 (유의사항) 사업장 방문 시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철저,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한 경우에는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실시

② 사업장 유선 및 서면지도(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유지)

- 확진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지역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은 유선 및 서면지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행요원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 및 서면지도 가능

③ 사업장 지도 유예

-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휴업·폐쇄된 사업장은 지도를 유예하되
 - 휴업·폐쇄 종료 시 사업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 및 서면지도 실시

3. 주요 지도내용

- 보건관리 기술지도에 추가하여 사업장 방역 관련하여 지도 실시
- 사업장 기술지도 전에 유선으로 사업장 내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대응지침 이행 지도

4. 유선 및 서면 지도시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따라 유선 및 서면지도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문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장으로 하여금 붙임 자체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후 방역지침 준수 유선 지도
 - * 자체 점검표를 회신받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 서면 지도 실시

참고16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021.11.4.)

- ❖ (배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 ❖ (원 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I 적용 기준

-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II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 (예외사항)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참고>을 따름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흡에 한정함), 7.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나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마넛알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흡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 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
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서,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
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
도록 안전보건공단에게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
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
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 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 (일반) 1시간 ▶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50인 미만	50~299인 미만	300인 이상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원칙적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 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 포함)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
- 이후,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1. 12. 18.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두자리 띄어 앉기)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등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C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폰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공통사항〉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소규모(1-49명)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중규모(50~299미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대규모(300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 (물, 무알코올 음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제공)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장소별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 ■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만 적용**

* ① 미접종자 중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② 18세 이하(22.4.1 이후 변경가능), ③ 완치자, ④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 등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에 의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원회, 방송제작 및 송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만으로 구성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 다만,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사적 모임〉

- 전국 6인까지만 모임가능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3차 개편시 인원 제한 해제 예정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전국 6명까지만 모임 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 이용 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② 임종 등

〈출 장〉

-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입국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조치사항〉

-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 등 **종사자 증상 확인**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은 1일 2회 확인(기록은 권고)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호흡기 증상 등 종사자 증상확인 주기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1일 1회 이상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히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히공간을 활용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조치사항〉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식사 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환기는 1일 3회 이상(환기시간 게시)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조치사항〉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등), 탑승자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 음식물 섭취금지(물, 무알콜 허용) ■ 차량 정원 초과 금지 ■ 탑승자 확인(소속 근로자만 탑승)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시 변경사항 적용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방문자(외부인)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실시
-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주요사항]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조치사항>

- 가급적 1인 1실 사용,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 수 (남/여)	명(/)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및 교육된 매뉴얼 게시	☐ 실시 ☐ 미실시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요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요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 예 ☐ 아니요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요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요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요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요	
회의· 교육, 모임 및 회식,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예 ☐ 아니요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 예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출장 등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참석 금지) 준수	☐ 아니요	
	1-2)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 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요	
	1-3)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제한 인원 기준 준수(핵심 방역수칙 의 무) * · (소규모, 1-49명)는 접촉 여부 관계 없이 가능, · (중규모, 50-299명)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 (대규모, 3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승인 후 가능 ※ 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4㎡ 확보 등 기준 준수	☐ 예 ☐ 아니요	
	2)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요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0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요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4) 사적 모임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제한 인원 기준 준수 * 전국 6인까지만 모임 가능	☐ 예 ☐ 아니요	
	1)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요	
	3)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 종사자 증상 확인 ※ 발열 체크는 1일 2회 실시	☐ 예 ☐ 아니요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요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요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요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어려울 경우 컴퓨터· 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요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요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요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4-1) 개인 간 거리 유지, 개인접시 덜어먹기	☐ 예 ☐ 아니요	
	4-2) 공용 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요	
	4-3) 점심시간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예 ☐ 아니요	
	4-4) 필요시 포장·배달을 활용	☐ 예 ☐ 아니요	
	4-5) 식사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예 ☐ 아니요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요	
	5-1) 흡연실은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바닥 표시 등)	☐ 예 ☐ 아니요	
소독 및 위생 · 청결 / 통근 차량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 예 ☐ 아니요	
	2) 매일 3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요	
	3)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요	
	4)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하거나 구매 지원	☐ 예 ☐ 아니요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요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요	
	7)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예 ☐ 아니요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예 ☐ 아니요	
	9) 통근 차량 1일 단위 소독, 운행 전·후 환기 철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1) 탑승 및 운행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2)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3) 음식물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9-4) 차량 정원 초과 금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5) 탑승자 확인 (소속 근로자만 탑승)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기숙사 관리	1) 방역 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동선 분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 수칙 게시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 입·퇴소자 관리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4) 가급적 1인 1실 사용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5) 식당(공용취사 공간 등)외 취사 및 취식 금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6)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 시까지 유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 “미지정”, “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	--

.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1. 격리면제 일시 중지 조치(방역강화)

- 11개국*에 대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발급중단('21.12.3~)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및 PCR 검사 3회 등(입국 전 PCR, 입국후 1일 PCR,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6~7일차 PCR) 실시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2. 모든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및 강화('21.12.2~)

- 일반 격리면제 발급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일괄 반려처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

3.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21.12.3~)

- 기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중 인도적방문(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효력중단
 - * 기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은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조치 사항(개방성 유지)

붙임3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비교

구 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회와 행사 교육 등	■ 소규모(1-49명)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중규모(50~299미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대규모(300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장소별,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 ■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체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체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만 모임가능 ※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② 임종 등	■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출장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모니터링 (호흡기 증상 확인)	■ 1일 1회 이상(증상 확인 후 대장 작성) ■ 체온 측정은 1일 2회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의무>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의무>
-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 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소규모(1-49명)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중규모(50~299미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대규모(300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 (물, 무알코올 음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제공)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 (장소별,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 ■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만 적용

* ❶ 미접종자 중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자, ❷ 18세 이하('22.4.1이후 변경가능), ❸ 완치자, ❹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 등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에 의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 다만,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사적 모임〉

- 전국 6인까지만 모임가능*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3차 개편시 인원 제한 해제 예정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전국 6인까지만 모임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 이용 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예외사항: ❶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❷ 임종 등

〈출 장〉

-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입국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 및 검사 조치 <의무>

〈조치사항〉

-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 등 종사자 증상확인 <의무>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은 1일 2회 확인(기록은 권고)
-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호흡기 증상 등 종사자 증상확인 주기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1일 1회 이상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의무>

*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공통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간 간격, 노동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의무>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씻기 공간 마련<의무>
-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조치사항〉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식사 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환기는 1일 3회 이상(환기시간 게시)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등), 탑승자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	3차 개편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 음식물 섭취금지(물, 무알콜 허용) ■ 차량 정원 초과 금지 ■ 탑승자 확인(소속 근로자만 탑승)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시 변경사항 적용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방문자(외부인)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실시
-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주요사항]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조치사항〉

- 가급적 1인 1실 사용,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 수 (남/여)	명(/)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 마련하고 안내 및 교육된 매뉴얼 게시	☐ 실시 ☐ 미실시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요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요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 예 ☐ 아니요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요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요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요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요	
회의· 교육, 모임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예 ☐ 아니요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및 회식, 출장 등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요	
	1-2)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요	
	1-3)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제한 인원 기준 준수(핵심 방역수칙 의무) * ◦(소규모, 1-49명)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가능, ◦(중규모, 50-299명)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대규모, 3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승인 후 가능 ※ 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4㎡ 확보 등 기준 준수	☐ 예 ☐ 아니요	
	2)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요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0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요	
	4) 사적 모임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제한 인원 기준 준수 * 전국 6인까지만 모임 가능	☐ 예 ☐ 아니요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1)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요	
	3)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 종사자 증상 확인 ※ 발열 체크는 1일 2회 실시	☐ 예 ☐ 아니요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요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요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요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어려울 경우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요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요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4)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부여	☐ 예 ☐ 아니요	
	5)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요	
	5-1) 개인 간 거리 유지, 개인접시 덜어먹기	☐ 예 ☐ 아니요	
	5-2) 공용 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요	
	5-3) 점심시간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예 ☐ 아니요	
	5-4) 필요시 포장·배달을 활용	☐ 예 ☐ 아니요	
	5-5) 식사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예 ☐ 아니요	
	6)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요	
	6-1) 흡연실은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바닥 표시 등)	☐ 예 ☐ 아니요	
소독 및 위생 · 청결 / 통근 차량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 예 ☐ 아니요	
	2) 매일 3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요	
	3)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요	
	4)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하거나 구매 지원	☐ 예 ☐ 아니요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요	
	6) 개인용 마이크, 핸드셋 등 사무기기 소독·청결 유지	☐ 예 ☐ 아니요	
	7)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예 ☐ 아니요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예 ☐ 아니요	
	9) 통근 차량 1일 단위 소독, 운행 전·후 환기 철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2)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9-3) 음식물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4) 차량 정원 초과 금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9-5) 탑승자 확인(소속 근로자만 탑승)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기숙사 관리	1) 방역 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동선 분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 수칙 게시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 입·퇴소자 관리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4) 가급적 1인 1실 사용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5) 식당(공용취사 공간 등)외 취사 및 취식 금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6)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 시까지 유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 “미지정”, “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	--

.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1.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확진자 발생 등 상황 대응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의 전담부서 지정 및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
- 발주자-현장,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 방역관리자 배치 사실을 현장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근로자 교육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 작업현장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용, 공정 변경,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 수립
 - 근로자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작업동선 분리, 칸막이 설치 등 고려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자재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근 노동자, 의심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인력 부족을 대비하여 공사 계획, 근로자 관리대책 등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① 사업주 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위생물품 지원

- 현장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 전파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되, **대규모 집합교육** 지양

*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실·소실,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전파경로)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기침·재채기) 또는 비말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치료)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백신·치료제는 현재 개발 중

- 일용직·외국인근로자도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불법체류자 통보제외제도** 등 **다국어** 안내물을 현장사무실, **식당·휴게실** 및 **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ncov.mohw.go.kr) 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시된 다국어 포스터 자료 활용

-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 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 및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등 공동이용시설

□ 현장 출입 관리

- **근로자·외부 방문객**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확인**,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실제 연락처 포함) 작성

- 출입구는 최소로 운영하고, 필요 시 건강상태 추가 확인(1일 1회 이상)

⇒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출근 금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현장 방역관리자에 알린 뒤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근로자 관리

- ①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②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③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 권고*

*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문의

⇒ 출근 금지 대상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권고 또는 휴가를 부여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허가제(E-9, H-2)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미입국 근로자는 입국유예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입국한 경우 사업장 인도 후 상황에 따라 현장출입 관리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 검사 참여 독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 지침 전파

- 작업 중이나 휴식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의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창문 개방이 어려울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
 - 또한, 밀폐된 공간 및 실내작업장에서도 작업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 공용 작업도구, 차량 및 건설기계, 난간, 사다리,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표면을 수시로 소독(일 2회 이상)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숙소 제공 시, 건물 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개인 침구·수건류 분리 사용,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숙소 내 모임 금지

-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 단체활동 축소, 근로자 간 접촉 최소화

- 아침조화·집합교육 등 단체활동, 비말이 될 수 있는 구호외치기 등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화장실·휴게실·식당 등 공용시설의 동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식당 내 칸막이 설치, 식사시간 시차이용 및 한방향 식사 조치
 - 식당 내 마스크 착용, 대기줄에서 거리두기, 대화 자제 등 안내
 - 휴식시간 분산을 통해 휴게실 이용 인원 최소화, 휴게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취식 금지 등 안내

② 근로자 행동요령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귀가조치
- 올바른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
- 작업 중 일상대화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대화 시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 휴게실·식당은 개별 이용하고 이용시간을 최소화, 실외흡연실 이용 시에도 거리두기, 대화 자제 및 손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작업 전 10분 이상 환기 실시
- 일과 후 소규모 모임이나 회식 자제

4.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신고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

◆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심환자 격리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철저히 소독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의심환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방역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 현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 발주처·원도급사 및 인근 현장에 전파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공유
- 현장출입자 명단 제공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 철저
 -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작업 재개 가능
 - * 소독 당일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소독제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1일간 사용 금지
 - 확진환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 근로자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
-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기간 판단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 확진환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0.2.12)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국토부, '2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금액이 3% 이상 변동)도 반영
 -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기한 연장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 129)되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 예방 단계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 - 근로자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
원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출입 시 명부 작성,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
현장소장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하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
근로자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인력소개소	- 건설현장 인력 모집·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체 방역·소독 등 시행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게 통보
근로자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공통사항]**<근로자>**

- 모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 업체 관리자가 실시하는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하기(필요 시 검사받기)
 - * 특히 냉장·냉동 시설 등 저온환경 근무자는 각별히 주의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관리자·운영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하기
 -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외국인근로자(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안내하기
-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도록 안내하기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업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필요 시 검사받도록 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 자동환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하고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자제 안내하기(필요 시 검사받도록 조치)
 -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근로자]

- 작업장 내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는 매일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점검하고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내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알린 후 퇴근하기
- 개인별 위생복 등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
-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식육의 발골·정형 등 작업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 조별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외부식당 이용 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하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개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 손 소독제 또는 위생장갑 사용하고, 배식·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에 동참하고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하기
-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통근버스 차량 내에서 대화·전화통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제한하고 탑승 전 탑승인원이 차량 정원을 초과한 경우 탑승하지 않기
- 사무실, 작업장 등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

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관리자·운영자]

○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기

○ 식육 등 납품·배송 시 대면 접촉자 마스크 착용 및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교육·관리하기

○ 작업장 채용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방역지침 교육 시행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일용직 근로자도 유증상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이익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사업장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의 방문목적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을 일용직(아르바이트생, 방문자 포함)에게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세탁·소독을 완료한 청결 상태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 육가공 주요 작업장은 자주 환기, 소독하도록 지시하기

○ 밀폐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지도하기

○ 작업장 구역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간격 유지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의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일 1회 이상)

○ 작업장 내 기계·기구류, 냉장·냉동창고 등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안내하기

-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기
- 휴식시간은 보장하고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 분할)
 - 외부식당 이용 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하기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매일 3회 이상 환기하기
-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 * 작업 지시,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작업 중 대화는 자제
- 흡연 장소에 2m 거리 두기를 가시적으로 표시(스티커, 페인트 등)하기
-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관리*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자주 환기(2시간 마다 1회 이상)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구 손잡이 등)은 철저히 소독(매일 1회 이상)하기
 -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 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게시하고 배식·식사 시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출입구,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필요 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고,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 *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 등을 고려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차량 내 대화·전화통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제한 안내하고 차량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인원 관리하기
 - * 차량 운행 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 작업장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 구내식당, 기숙사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해당 유형(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음식점의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지침을 준용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 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9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허가 4주~12주)	-	21일	4주
국내허가 제 품명 (허가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21.2.10.)	코비드-19 백신얀센주 (‘21.4.7.)	코미나티주 (‘21.3.5.)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21.5.21.)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 ①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 해제 전 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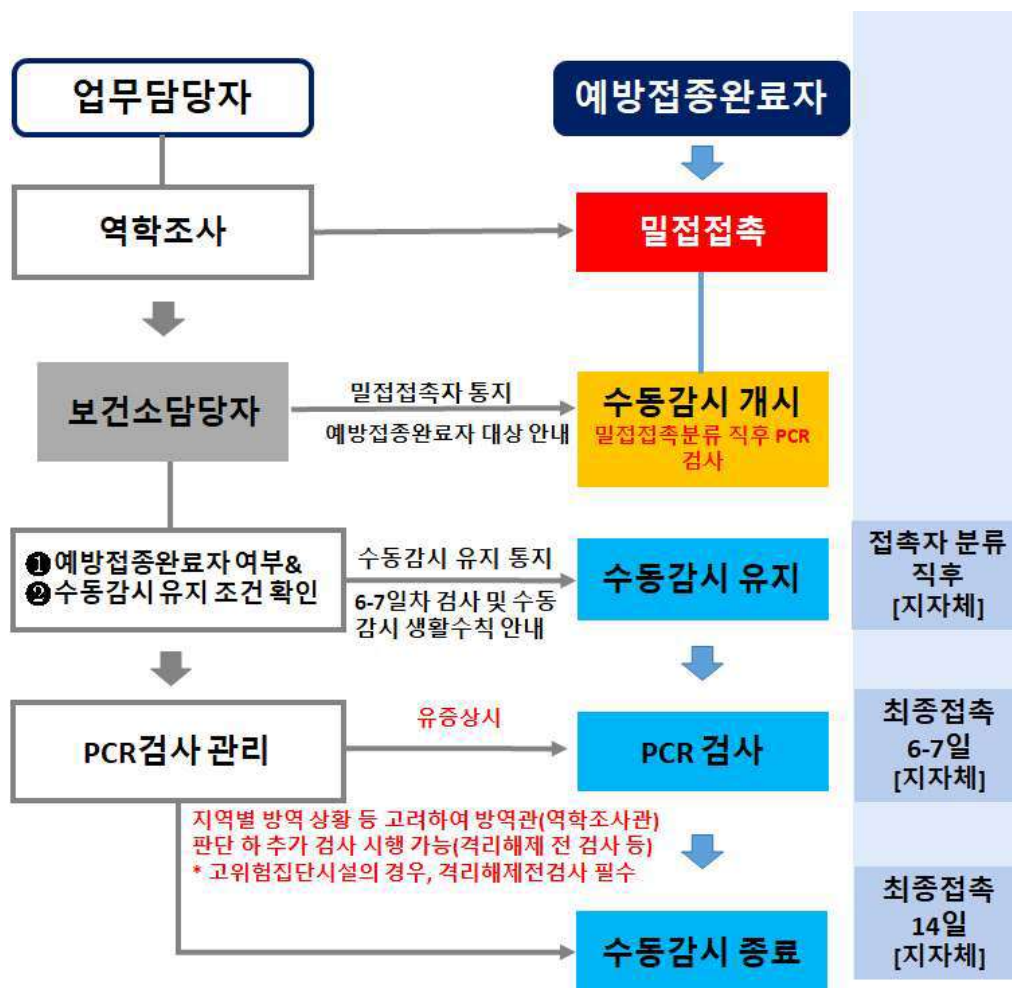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4 해외입국 관련 사항[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4-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4-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4-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4-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무증상일 것

③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당 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4-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①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 지침팀 등)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단,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 관리(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대상 조건▶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조건▶ 충족 시 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를 받게 되며, 입국 이후 1일차와 6~7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입국자는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에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자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검역단계]

- 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제시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지자체단계]

- ② (PCR검사)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③ (수동감시 실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수동감시 실시(자가격리앱 삭제)
-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관할보건소)
 - 검사를 받지 않거나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되며, 확진자는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대상 조건▶

-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며, 조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인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붙임 2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시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①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_____월 _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알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❶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❷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월 ____일~____월 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붙임 3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통상절차 진행	① 밀접접촉자 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 접촉자용)'도 함께 통지 ②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	---

나. 지자체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 확인 후	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②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 ②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③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④ 수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 ②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3-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 해외입국 사례

가. [검역단계]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시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입국자가 제시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예방접종 후 2주 경과) ②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4-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③ 상기조건을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확인된 경우 여권에 스티커 부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배부
무증상자	① 자가격리앱 설치(특별입국부스), 실거주지 이동 안내 ②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입국 1일차) 실시 안내
유증상자	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②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

나. [지지자체단계]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입국후 1일내	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 ♣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알려줄 경우 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③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④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통지* 또는 교부 (②, ③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입국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⑤ 자가격리앱 삭제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감시 해제 고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4-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붙임 4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1.05.10.)

□ 개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 우선 지원 →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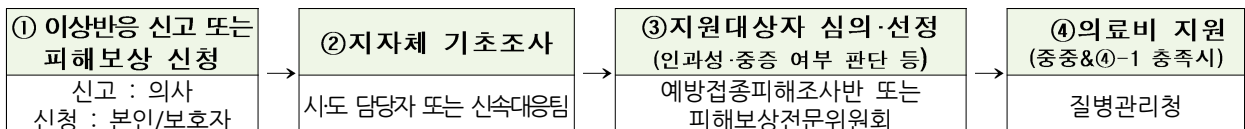
* (심의기준, ①,②,③은 피해보상금 지급)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후 사망한 경우는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백신 이상반응 치료와 관계된 비급여는 포함

- (지원절차)



- (지원규모) 1인당 1,000만원 한도

- (사후관리) 근거 자료가 도출되어 인과성 확인되는 경우 → 선 지원된 의료비 제외 후 보상

* 단, 동일한 진료 내역으로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

□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질의 답변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Q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Q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기존 기저 질환의 치료비, 간병비와 사망 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진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 내역 제출 필요

Q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추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Q6. 1차 지원받았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의 국소반응 및 발열, 근육통 등 전신반응 등의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